「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❍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
❍ 제안일자 : 2024. 1. 5.

❍ 회부일자 : 2024. 1. 9.

2. 제안이유

❍ 우리 군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, 수당 지급을 현실화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❍ 결산검사 위원 ‘5명’ → ‘5명 이상 7명 이내’로 확대(안 제2조)

❍ 결산검사 추천적격자로 ‘재무관리 전문가’ 포함(안 제4조)

❍ 위원의 수당 증액(안 [별표])

- (현행) 10만원 → (개정) 20만원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❍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[1]에서 **‘결산검사위원의 선임’에 관하여** 위임 범위 내에서 **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**함.

나. 입법의 취지

❍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결산 검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 업무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재정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❍ 안 **제2조(위원의 수) 중** 검사위원의 수를 [현행] 5명(정수) 에서 [개정] 5명에서 7명 이내(범위)로 수정하여 결산 검사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폭넓은 위원 선임을 지원하고자 함.

---

1) **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**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**시·군** 및 자치구의 경우 **3명 이상 10명 이내**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**검사위원**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❍ 안 **제4조(추천적격 및 결격)**에서는 위원 추천의 자격으로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여 결산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.

❍ 안 **별표**에서 지급 수당을 [현행] 10만원 에서 [개정]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본업을 차치하고 결산 검사에 종사하는 위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❍ **우리 군 예산 결산 검사의 내실을 제고**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수권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